

# 대한민국 헌법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장 총강

###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 제2조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헌법의 기본원리] 평화 통일 지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 [헌법의 기본원리] 국제평화주의

-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cf.) **모든 전쟁 부인 (x)**

### 제6조 → [헌법의 기본원리] 국제평화주의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제법의 법원(法源)>

- **조약**: 국가 간 명시적 합의 / 포괄적 구속력 X → ex.) ○○ 협정, □□ 방위 조약, △△ 협약

#### Check Point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포괄적 구속력 O

① **국제 관습법**: 반복적인 국제 관행 + 법적 확신 → ex.) 내정 불간섭, 외교관의 면책 특권

② **법의 일반 원칙**: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한 법의 원칙

→ ex.) 신의 성실의 원칙(민§2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민§2②),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 민법

## 제1편 총칙

### 제1조 (법원) → 민법의 법원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제2조 (신의성실) [국제법의 법원] 법의 일반 원칙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신의 성실의 원칙
-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자연인의 권리 능력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건 없는, 부담 없는 증여 ⇒ 취소권 성립 X (확정적 유효)
-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취소 가능 (잠정적 유효) by. 법정대리인

###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 용돈의 처분 ⇒ 취소권 성립 X (확정적 유효)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의 허락) → 영업 전반에 허락을 받은 경우의 매매 계약 ⇒ 취소권 성립 X (확정적 유효)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확답촉구권: to. 미성년자(x) / 법정대리인에게 행사(o)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 ↳ 확답 없이 기간 경과 ⇒ 추진한 것으로 간주 (취소 불가, 확정적 유효)

〈정치와 법〉 법률 조문 총정리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민법

형법/소년법

근로기준법/노조법

국제연합 헌장

<b>Check Point</b>	<p>〈보안처분〉 → 형벌의 대안적 제재수단 (for. 재범 방지, 범죄 예방, 교화 등)</p> <p>(5) <b>치료감호</b> → 심신상실자(구O, 위O, 책X)에게 부과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b></li> </ul> <p>이 법은 <b>심신장애 상태</b>,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치료감호대상자)</b></li> </ul> <p>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p> <p>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b>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b>으로서 <b>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b> → <b>심신상실자 / 심신미약자</b></p> <p>(6) <b>보호관찰</b> → 집행 유예·선고 유예 판결 이후, 가석방 이후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b></li> </ul> <p>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갹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b>Check Point</b>	<p>〈형사 절차 - 공판 단계 정리〉 (수사 절차: p.3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검사</b> → <b>기소 처분</b> (공소 제기) ⇒ 검사(원고) vs 피고인 → <b>유죄 입증 책임: 검사(원고)에게</b></li> <li>↳ <b>불기소 처분</b> → <b>혐의 없음: 무죄 취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죄가 안됨</b> (위법성/책임 조각): <b>무죄 취지</b></li> <li>↳ <b>공소권 없음</b> (공소시효 완성)</li> <li>↳ <b>기소 유예: 유죄 취지</b> → 형사 보상 청구 불가</li> </ul> </li> <li>• 피고인: <b>불구속 재판 원칙</b></li> <li>• 구속 기소 → 구속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피고인 측: 법원에 보석</b> 신청 가능 → <b>인용</b> ⇒ <b>석방</b> → <b>불구속 재판</b></li> <li>↳ <b>기각</b> → <b>구속 재판</b></li> </ul> </li> </ul> <p>(1) <b>모두절차</b>: 피고인에게 <b>진술 거부권 고지</b>(법관), <b>인정 신문, 검사의 기소 요지 진술</b>  <b>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b></p> <p>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b>형사소송법 제284조 (인정신문)</b></p> <p>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p> <p><b>형사소송법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b></p> <p>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2) <b>심리 절차: 증거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사실관계 확정, 검사의 구형</b>  <b>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b></p> <p>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p>
--------------------	--

#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1조 (목적) →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노조법):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Check Point	〈근로자의 권리〉
	<p>(1) <b>근로의 권리</b>: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p> <p>헌법 제32조</p> <p>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p> <p>(2) <b>근로 3권 (노동 3권)</b> →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근로3권 보장 O / 사용자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단결권</b>: 근로자들이 <b>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고 가입</b>할 수 있는 권리</li> <li>• <b>단체 교섭권</b>: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에 관하여 <b>사용자와 교섭</b>하여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li> <li>• <b>단체 행동권</b>: 단체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b>쟁의 행위</b> 등의 <b>단체 행동</b>을 할 수 있는 권리</li> </ul>

제4조 (정당행위) → 정당한 쟁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손해배상책임 X, 형벌 X)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제53조 (조정개시)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2조 (중재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